

부산직할시사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 관한 조례개정조례안

부산직할시사하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1 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이라 함은 부산직할시폐기물관리및요금등에관한조례 제2조 제2호에 규정된 일반폐기물을 말한다.
2. “대형폐기물”이라 함은 품명식별이 가능한 가구, 가전제품, 사무용 기자재, 냉·난방기구 등으로서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규격봉투에 담을 수 없는 폐기물을 말한다.

제 3 조(폐기물의 감량화) ① 일상생활 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이하 “배출자”라 한다)는 폐기물의 감량화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부산직할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배출자가 스스로 처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폐기물 배출자에게 소각·퇴비화시설 등 적절한 감량시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③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다량 배출자는 매년 11월 30일까지 익년도 폐기물감량화 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 4 조(폐기물의 분리보관) ①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배출자는 재활용 가능 폐기물과 기타 폐기물로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리 종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 5 조(보관시설 등 설치관리) ①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배출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신축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당해 건축물의 준공전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 폐기물 보관시설이나 용기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내부 및 외부청소를 실시하는 등 깨끗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관시설 및 용기를 설치할 때에는 교통장애 여부, 도시미관, 주변생활 여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설치된 보관시설 및 용기가 교통장애 등의 사유로 계속 존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즉시 철거 또는 이전을 명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설치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없이 직접 철거하거나 이전할 수 있다.

제 6 조(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배출자가 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폐기물은 제외한다.

1. 재활용 가능 폐기물
2. 연탄재
3. 제2조 제2호에 의한 대형폐기물
4.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다량배출자의 폐기물
5.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수집·운반·처리자의 폐기물
6. 기타 구청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폐기물

② 배출자는 제1항 각호의 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제 7 조(배출 또는 수거일자 지정운영) 구청장은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종류별로 배출 또는 수거일자를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 8 조(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구청장은 폐기물 배출자가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을 적정하게 배출할 수 있도록 당해 폐기물의 종류별 수거일, 수거장소 등을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고하고, 동 내용이 표시된 환경달력을 제작, 배포하는 등 지역주민의 폐기물 배출이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배출자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수집·운반업체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폐기물을 수집운반하였을 경우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영업정지,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취하거나 당해업체에 대한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 9 조(쓰레기봉투의 용도·색상 등) ① 쓰레기봉투는 일반용 봉투와 공공용 봉투로 구분한다.

② 일반용 봉투에는 가정이나 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공공용 봉투에는 가로청소폐기물 등 구청장이 인정하는 지역이나 활동으로 수거한 폐기물을 각각 담아야 한다.

③ 쓰레기봉투의 색깔은 일반용 봉투는 옅은 청색, 공공용 봉투는 흰색으로 한다.

제10조(쓰레기봉투의 제작) ① 구청장은 쓰레기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 전면에 구의 휘장, 봉투용량, 주의사항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봉투의 규격, 사양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쓰레기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 일반용 봉투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쓰레기봉투 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를 통하여 공급하고, 공공용 봉투는 구청장이 용도에 맞도록 직접 또는 동을 통하여 공급한다.

②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 사용 대상자는 일반용 봉투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에서 직접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에는 지역주민들이 판매소임을 알 수 있도록 별표 1과 같은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④ 일반용 봉투의 공급 및 판매가격과 판매소의 판매이익 산정방법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구청장은 부산지역내 다른 구와의 가격 균형을 유지하는 범위 안에서 공급 및 판매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 및 판매가격은 폐기물 처리비용의 자립도 향상을 위해 매년 상향 조정해 나가야 한다.

제12조(폐기물 수집·운반·처리의 대행) ① 구청장은 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수집운반은 폐기물 수집·운반업자에게, 처리는 폐기물 중간 처리업자 또는 최종 처리업자에게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행을 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대행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대행구역, 수집·운반·처리예상 물량, 계약금액 및 기간 등
2. 수집·운반 또는 처리방법(차량진입 불가지역에 대한 운반방법 포함)
3. 수집·운반 또는 처리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규격 및 수량
4. 차고지 및 사무소 등의 소재지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6. 대행업자 준수사항

7. 기타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상수거물량은 폐기물 배출전망, 전년도 수거·처리실적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제13조(폐기물수집운반, 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① 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의 수집운반, 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고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쓰레기봉투를 판매소에서 구입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쓰레기봉투의 구입시에 수수료부과·징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2.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부과징수한다.

② 연탄재 및 재활용가능 폐기물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다.

제14조(수수료의 납기 및 징수방법) ① 구청장은 수수료의 원활한 징수를 위해 쓰레기봉투 공급대금을 판매소로부터 선납받아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후납으로 할 수 있다.

② 대형폐기물에 대한 수수료는 수거시마다 징수할 수 있다.

제15조(쓰레기봉투의 매수) ① 판매소에서는 배출자가 전출 등을 사유로 일반용 봉투의 환매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제16조(수수료의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 배출량에 해당하는 쓰레기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기본배출량은 주민 1인당 월 60리터로 한다.

1. 생활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
2.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경우
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7조(일반폐기물의 수거방식등 개선) ① 구청장은 폐기물의 적절한 처리를 통한 주민편익증진을 위하여 폐기물의 수거인력 및 장비를 지속적으로 개선·확충·보강하면서 수거방식을 문전수거로 전환해 나가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전수거를 원활히 시행하기 위해 장단기 적환장 확보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제1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대되는 수입은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거인력, 장비,

시설 등을 개선, 확충, 보강하는데 투자되어야 한다.

제18조(자체수집·운반·처리자 지정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여 폐기물 자체수집·운반·처리자(이하 “처리자”라 한다)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고 구청장은 이를 지정하여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처리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점포, 상가, 시장 등이 지역단위별로 폐기물 처리를 신청할 때

2. 동일 건물내의 사무소, 점포 등으로서 건물 단위로 폐기물 처리를 신청할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자가 지정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해지하여야 한다.

제19조(무단투기 등 신고 포상금 지급) 구청장은 불법·무단투기 등으로 인한 생활환경 오염의 방지를 위해 폐기물의 무단투기 등의 신고 포상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부과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21조(첨문) 영 제4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에 의견진술기간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 통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태료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부터 발생하게 된다.

제22조(과태료부과·징수절차 등) ① 구청장은 법 제63조 및 영 제42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의 과태료 처분통지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7조 및 제15조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장소에서 별지 제3호 서식의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

② 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간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발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처분을 받은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경우 구청장은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

기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8호 서식에 의거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23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구청장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폐기물 처리시설 등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관리, 운영을 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가 시설장비의 노후 등 기타 사유로 위탁업무를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지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로부터 6개월 이전에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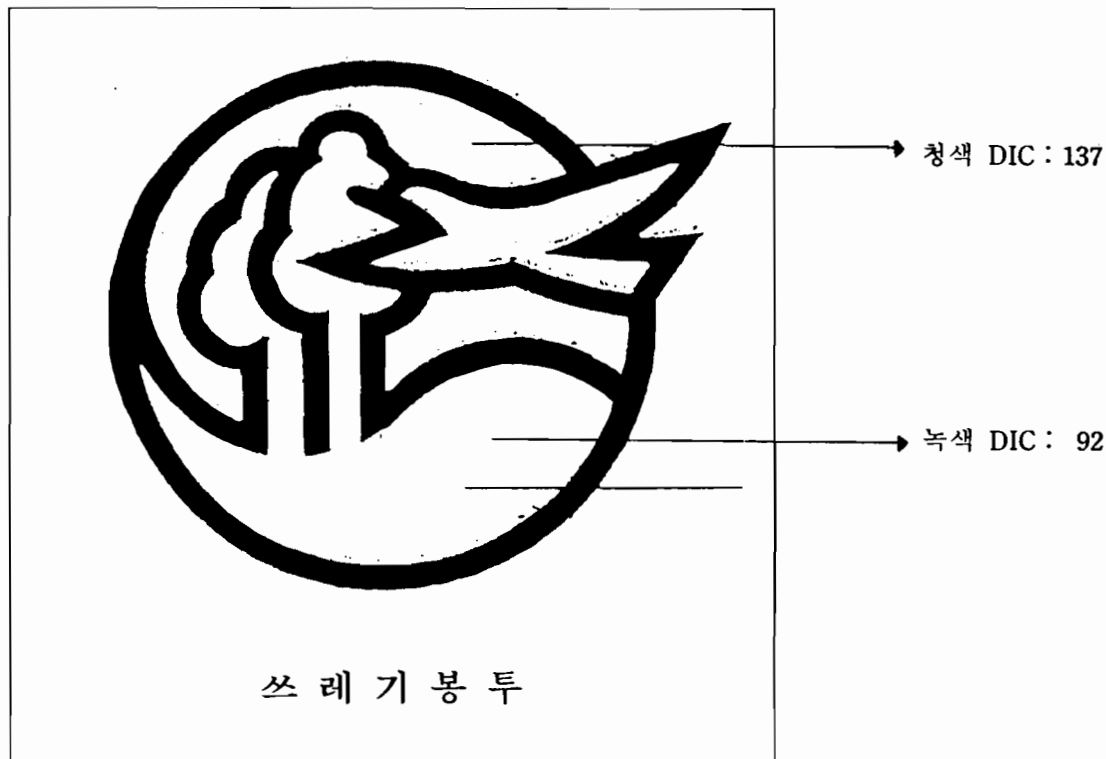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수수료 등 부과·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1]

쓰레기봉투판매소 표지(제11조 제3항 관련)



1. 글씨위치는 표시의 하단접점으로부터 표시 지름의 1/10정도 띄어서 중심 맞춤으로 표기한다.
2. 글씨체는 견출고딕 평2체를 쓰도록 하며, 글씨의 크기는 표시지름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3. 표지의 색은 상기와 같이 청색(DIC : 137), 녹색(DIC : 92)으로 2도 표현하거나 청색(DIC : 579), 녹색(DIC : 643), 검정색, 흰색, 금색 또는 은색의 단색으로 표현할 수 있다.

[별표 2]

쓰레기봉투공급 및 판매가격과 판매이익 산정방법 (제11조 제4항 관련)

1. 판매소 공급가격 : $((\text{쓰레기수집운반비} + \text{처리비}) \times \text{부산직할시목표자립도} + \text{봉투제작비})$
2. 판매이익 : $((\text{쓰레기수집운반비} + \text{처리비}) \times \text{부산직할시목표자립도} \times \text{판매이익율}(9\%))$
3. 판매가격 : 판매소 공급가격 + 판매이익

[별표 3]

대형폐기물수집·운반·처리수수료 (제13조 제1항 제2호 관련)

(단위: 원/개)

품명	규격	수집운반	처리 (소각·파쇄등)	비고
냉장고	500ℓ 이상	4,000	4,000	○품명에 명시되지 않은 대형폐기물 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
	300ℓ 이상	3,000	3,000	
	300ℓ 미만	2,000	2,000	
텔레비전	42인치 이상	3,000	2,000	
	12인치 이상	2,000	1,000	
세탁기	모든 규격	2,000	2,000	
에어콘	264㎡형 이상	4,000	4,000	
	66㎡형 이상	3,000	2,000	
	66㎡형 미만	2,000	1,000	
가스오븐렌지	높이 1m 이상	2,000	2,000	
	높이 1m 미만	1,000	1,000	
탈수기	모든 규격	1,000	1,000	
공기청정기	높이 1m 이상	1,000	1,000	
장농	120cm장1쪽	10,000	5,000	
	90cm장1쪽	6,000	4,000	
침대	2 인용	10,000	5,000	
	1 인용	6,000	4,000	
	매트리스	5,000	4,000	

품명	규격	수집운반	처리 (소각·파쇄등)	비고
쇼파	3인용	3,000	2,000	
	1인용	1,000	1,000	
책상	양수, 대형	3,000	2,000	
	편수, 소형	2,000	2,000	
식탁	6인용 이상	3,000	2,000	
	6인용 미만	2,000	2,000	
피아노	그랜드	10,000	5,000	
	어프라이트	6,000	4,000	
기타	선풍기, 보통의 자, 문짝, 스킷 로폴 포장재, 이 불 등	1,000	500	

[별표 4]

위반사항별 과태료 부과기준(제20조 관련)

부과대상	부과금액		
	1차 위반시또는 위반시마다	2차 위반	3차 위반
가. 법 제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폐기물을 버린 자			
1. 별도 기구없이 휴대하고 있는 폐기물(담배 꽂초, 휴지 등)을 버린 자	25천원		
2. 간이보관기구(비닐봉지, 천보자기 등)를 이 용하여 폐기물을 버린 자	50천원		
3. 대형폐기물(가구, 가전제품 등)을 버린 자	200천원		
4. 휴식 또는 행락중 발생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아니한 자	200천원		
5. 차량, 손수레 등 별도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린 자	500천원	700천원	1,000천원
6.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건축 폐재류 등)을 버린 자(법 제14조 제1항의 다량배출자 및 법 제17조 제1항의 처리업 자는 제외)	1,000천원		
나.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종류, 성상별로 분리보관하지 아니한 자			
1.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다량배출자의 경 우	400천원	700천원	1,000천원
2. 다량배출자 이외의 폐기물 배출자의 경우 (제6조 제1항 위반자 포함)	50천원		

부 과 대 상	부 과 금 액		
	1차 위반시또는 위 반 시 마 다	2 차 위 반	3 차 위 반
다. 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1.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다량배출자의 경 우	400천원	700천원	1,000천원
2. 일반가정의 경우	50천원		
3. 제1호와 제2호 이외의 폐기물 배출자의 경 우	100천원	200천원	400천원

- 위반행위가 2 이상일 때에는 “위반사항별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한 과태료를 합산하여 부과한다.
-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경우에 한하며 3차 이상 위반시에는 3차 위반 부과금액을 적용한다.
- “위반사항별 과태료 부과기준”에 열거되지 아니한 경우의 과태료 금액은 유사한 경우에 준하여 정한다.
- 구청장은 “위반사항별 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하지 아니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이에 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별지 제1호 서식]

제 호

수 신

제 목 과태료 처분 통지

1. 귀하께서는 다음과 같이 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다.

가. 위반일시 :

나. 위반내용 :

2. 위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3.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첨 부 : 과태료 납부통지서 1 부.

년 월 일

사 하 구 청 장 (인)

210mm×297mm(신문용지 54g/m²)

[별지 제2호 서식]

과태료 납부통지서
(개인통지용)

제 호	회계년도	년도
세 입 과 목		
납 부 성 명		
의 무 자 주 소		
과태료금액	원	
위의 과태료는 법 제 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은행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사 하 구 청 장 (인)		

과태료 납부서
(수납은행 보관용)

제 호	회계년도	년도
세 입 과 목		
납 부 성 명		
의 무 자 주 소		
과태료금액	원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인	(인)	

영수필 통지서
(구 통보용)

제 호	회계년도	년도
세 입 과 목		
납 부 성 명		
의 무 자 주 소		
과태료금액	원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인	사하구청장귀하	

영 수 증
(개인통지용)

제 호	회계년도	년도
세 입 과 목		
납 부 성 명		
의 무 자 주 소		
과태료금액	원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납인	취급자인	

380mm×180mm(인쇄용지[특급] 34g/m²)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

(갑)

(처분기관 보관용)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

발행번호	제	호	회계년도		세입과목	
위반행위자	성명		주소			
과태료금액		원	납부기간	까지	납부장소	
위반사실	일시		내용			
위반법률	폐기물관리법 제 조		발부일자		의견진술기간	까지
위반행위자서명			주민등록번호		단속공무원 확인	

특기사항

※ 표의 뒷면 부분에 복사용 먹지를 부착인쇄

168mm×118mm(인쇄용지[특급] 34g/m²)

(을)

(피처분자 통지용)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

발행번호	제 호		회계년도			세입과목		
위반행위자	성명		주소					
과태료금액	원		납부기간	까지	납부장소			
위반사실	일시		내용					
위반법률	폐기물관리법 제 조		발부일자		의견진술기간	까지		
위반행위자 서명			주민등록번호		단속공무원 확인			

1. 위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63조에 의거 위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니 지정된 기간 및 장소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2. 위반사실에 의견이 있는 경우 위의 의견진술기간까지 처분기관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과태료처분의 효력은 의견진술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로부터 발생합니다.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의견진술기간이 종료된 다음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사 하 구 청 장 (인)

168mm×118mm(인쇄용지[특급] 34g/m²)

※ 표중 발행번호, 회계년도, 세입과목, 위반행위자, 과태료금액, 납부기간, 납부장소란의 뒷면에 복사용 먹지를 부착인쇄

(병)

(수납은행 보관용)

과 태 료 납 부 서

발 행 번 호	제 호		회 계 년 도		세 입 과 목	
납 부 의 무 자	성 명		주 소			
과 태 료 금 액	원		납 부 기 간	까지	납 부 장 소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 납 인

취 급 자 인

168mm×118mm(인쇄용지[특급] 34g/m²)

※ 표중 발행번호, 회계년도, 세입과목, 납부의무자, 과태료금액, 납부기간, 납부장소란의 뒷면에 복사용 먹지를 부착인쇄

(정)

(개인 통지용)

과 태 료 납 부 영 수 증

발 행 번 호	제 호	회 계 년 도		세 입 과 목	
납 부 의 무 자	성 명		주 소		
과 태 료 금 액		원	납 부 기 간	까지	납 부 장 소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 납 인

취 급 자 인

168mm×118mm(인쇄용지[특급] 34g/m²)

※ 표중 발행번호, 회계년도, 세입과목, 납부의무자, 과태료금액, 납부기간, 납부장소란의 뒷면에 복사용 먹지를 부착인쇄

(무)

(구 통보용)

과 태 료 납 부 영 수 필 통 지 서

발 행 번 호	제 호		회 계 년 도		세 입 과 목	
납 부 의 무 자	성 명		주 소			
과 태 료 금 액	원		납 부 기 간	까지	납 부 장 소	

위의 금액을 납부합니다.

년 월 일

수납은행 :

수 납 인

사 하 구 청 장 귀 하

[별지 제4호 서식]

제 호 과태료납부독촉장			
납 부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의 무 자	③ 주 소		
④ 과태료 납부통지서 번호			
⑤ 위 반 사 항			
⑥ 과 태 료 금 액		⑦ 당초 납부기일	

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년 월 일

사 하 구 청 장 (인)

210mm×297mm(신문용지 54g/m²)

[별지 제5호 서식]

제 호

과태료 부과취소(변경) 통지서

주 소 :

성 명 : 귀하

① 고 지 금 액	② 취 소(변경) 액	③ 차 액	비 고

취소(변경) 사유 :

년 월 일

사 하 구 청 장 (인)

210mm×297mm(신문용지 54g/m²)

〔별지 제6호 서식〕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신 청 인	① 성 명 (한자)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과 태 료 처 분 내 역	④ 부 과 기 간	⑤ 납부통지서번호
	⑥ 고지받은일자	⑦ 과 태 료 금 액
	⑧ 과태료 처분사유	
⑨ 과 태 료 처 분 에 대 한 불복사유		

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의 과태료처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사 하 구 청 장 귀하

210mm×297mm(신문용지 54g/m²)

[별지 제7호 서식]

제 호

수 신

발 신 : 사하구청장(인)

제 목 :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1. 제 조와 관련입니다.

2. 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한 바 본인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이의 제의가 있으니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하여 과태료 재판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자	① 성 명	(한자)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주 소			
과 태 료	④ 고지일자		⑤ 과태료금액	
처 분 내 역	⑥ 부과기간		⑦ 이의제기일자	

첨부 1. 과태료 처분통지서 사본 1부.

2.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사본 1부.

210mm×297mm(신문용지 54g/m²)

[별지 제8호 서식]

과 태 료 수 납 부

① 일련번호	② 통지서번호	③ 과 태 료 처분통지일	④ 독 촉 장 발 부 일	납 부 기 한		⑦ 금 액	납 부 의 무 자		⑩ 과 태 료 납 부 일	이 의 제 기	
				⑤당 초	⑥독 촉		⑧성 명	⑨주 소		⑪이의제기일	⑫법원통보일

210mm×297mm(신문용지 54g/m²)